

전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966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가소2413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인용금액표 제15 내지 26항 기재 각 인용액과 위 각 인용액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같은 항 기재 각 변제기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별지 인용금액표 제27 내지 30항 기재 각 변제기가 도래하면 별지 인용금액표 같은 항 기재 각 인용액을 각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삼계탕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유통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5. 피고의 어머니 E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E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27.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4차2655)(이하 원고가 E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삼계를 납품하면서 매월 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이자 부분은 면제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30,000,000원 중 11,082,000원이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22. 10. 20.자 원고 답변서 참조).

더불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물품 거래를 계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채무 중 원금 부분 30,000,000원의 변제를 보증하기로 하되, 2021. 3. 말경부터 30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1. 1. 29. F에게 피고의 어머니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2021. 3경부터 피고의 형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아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든 현금으로든 매월 1,000,000원씩 위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피고의 형과 논의한 내용을 말하였다.

② 원고의 배우자 F과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형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가 2021. 3. 말경부터 직접 원고에게 30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¹⁾.

③ 주채무자인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인용액 합계인 2,918,000원(= 14,000,000원(2021. 3. 31.부터 2022. 5. 18.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 11,082,000원(이미 변제된 금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같은 항 기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인용금액표 제15 내지 26항 기재 각 인용액(합계 12,000,000원, 당심 변론종결일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위 각 인용액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같은 항 기재 각 변제기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인용금액표 제27 내지 30항 기재 각 변제기가 도래하면 별지 인용금액표 같은 항 기재 각 인용액(합계 4,000,000원, 당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3. 5. 11.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참조),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그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이행도 거부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실제 도래하더라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이행기미도래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구나영, 판사 정유성

알겠습니다”, “F: 형한테 그렇게 알아서 100을 받든, 150을 받든, 200을 받든 (중략) 30,000,000원
피고 돈이 들어오면 되잖아. 피고: 네네” 부분